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0
------------	-----

제출년월일 : '98. 12.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근무상한 연령조항 일부 삭제
-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조항 신설 (안제11조의2, 안제11조의 3)
 -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해야함.

□ 개정조례안(안) : 붙임

□ 참고사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 경기도 자차 12100 - 2073('98. 9. 25)호 공문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략)</p> <p><u>③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u>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현행과 같음)</p> <p><u>③ <삭 제></u></p> <p><u>④ <삭 제></u></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 ~ 4. (생략)</p>	<p>제10조(직권면직).....</p> <p>.....</p> <p>.....</p> <p>.....</p> <p>1. <u>안산시</u></p> <p><u>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u></p> <p><u>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u></p> <p><u>기간이상.....</u></p> <p>.....</p> <p>2.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 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 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신 설〉</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증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 기간으로 본다.</p>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30
----------	-----

제안년월일 : 1998. 12. 22.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외 6인

1. 수 정 이 유

- 안 제11조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2. 주 요 골 자

- 안 제11조(휴직의 효력)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로 수정.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p> <p>①~②(생략)</p> <p><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u></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p> <p>①~②(원안과 같음)</p> <p><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u></p>